

미국 자동차보험 수리부품 고지 강화와 순정부품 선택권 논의

강윤지(姜允池) 연구원

요약

미국 유타주는 자동차 사고 수리 시 비순정부품 사용 가능성을 보험계약 체결·갱신 단계에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실제 수리 시 부품 종류와 품질기준, 보증 주체를 알 수 있게 됨. 첨단운전자보조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늘면서 외장부품 교체와 안전기능의 연계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하이오주·뉴욕주·텍사스주에서도 순정부품 선택권과 수리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 미국 유타(Utah)주는 자동차 사고 수리 시 비순정(Non-OEM)부품¹⁾의 사용 가능성을 보험계약 체결·갱신 단계부터 알리도록 법제화하여, 사고 발생 전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수리부품 적용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²⁾
 - 해당 법(H.B. 119)은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사고 수리 시 비순정부품을 허용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기존 법률도 비순정부품 사용 전 서면 통지와 수리 견적서 표시를 요구했으나, 개정 법률은 통지 시점을 보험계약 발행·갱신 단계로 특정해 소비자가 사고 발생 전에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실제 수리 견적서에는 부품의 적합성·품질·성능 기준까지 표시하도록 함(표 1) 참조)
 - 다만 이 법은 소비자에게 순정부품 선택권을 직접 부여하거나 비순정부품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부품 사용 방침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정보 제공 중심의 규제임

〈표 1〉 유타주 비순정부품 고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정보 제공 변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소비자에게 미치는 변화
보험계약 체결·갱신 시	비순정부품 사용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는 있었으나 통지 시점이 명확하지 않음	보험계약은 체결·갱신 시 비순정부품 사용 가능성을 서면으로 고지	사고 발생 전에 보험회사의 수리 부품 적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음
사고 수리 견적 시	비순정부품 표시와 보증 주체를 고지	부품 사용 근거와 적합성·품질·성능 기준을 추가 고지	부품 종류와 최소 품질기준을 함께 확인

주: 개정 법률은 정보 제공을 강화한 것으로, 순정부품 선택권이나 추가 보상을 새롭게 보장하는 것은 아님

자료: Utah State Legislature(2026), "H.B. 119 Automotive Repair Business Amendments" 및 개정 전 Utah Code §31A-22-319를 바탕으로 작성함

- 동 법의 적용 대상은 차량 외장을 구성하는 비기계식 판금·플라스틱 부품에 한정되지만, 이들 부품의 교체가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센서의 점검·보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늘면서 수리부품의 적합성과 품질이 안전 문제로도 부각되고 있음

1) 완성차 제조사가 아닌 별도의 부품업체가 특정 차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대체 부품으로, 통상 순정부품보다 가격이 낮아 사고 수리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됨

2) RDN(2026. 2. 24.), "Utah OEM replacement parts bill passes House"

- 유타주 법률에서 대체 수리부품은 자동차 외장을 구성하는 비기계식 판금 또는 플라스틱 교체부품으로 정의되며, 내·외측 패널을 포함하지만 센서·카메라·레이더와 같은 첨단 안전장치 부품은 직접적인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범퍼나 차체 패널을 교체하면 센서의 장착 위치와 각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제조사 기준에 따른 점검과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2025년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보정 항목이 포함된 수리 견적은 전년 대비 31.4% 증가했고, 보정이 포함된 경우 평균 비용은 688달러로 나타남³⁾
- 보험회사는 수리비 관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순정부품을 활용할 유인이 있는 반면, 소비자와 수리업체에서는 부품의 차량 적합성, 안전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보증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유타주 법률은 첨단 안전장치 부품이나 보정절차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지만, 외장부품 교체가 차량 안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품 관련 고지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타주의 법제화는 개별 주 차원의 단발성 조치라기보다 오하이오(Ohio)주, 뉴욕(New York)주 등에서 논의되는 순정부품 선택권과 수리정보 투명성 강화 흐름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음

- 오하이오주에서는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갱신 시 순정부품 사용 보장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소비자가 보상한도와 차액을 부담하면 순정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투명성 법안(Auto Insurance Transparency Act)이 주 하원에 제출됐으며, 현재 하원 보험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 뉴욕주에서는 수리업체가 교체부품의 종류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일정 기간 이내의 차량에는 원칙적으로 순정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됨⁴⁾
- 텍사스(Texas)주에서는 신차 인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에는 순정부품과 완성차 제조사의 수리절차를 적용하고, 보험회사가 수리업체에 일정 비율 이상의 비순정부품 사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025년 3월 상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유사 법안이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반복 제출됐고 관련 업계가 법안 보완과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2027년 정기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⁵⁾

○ 관련 규제가 확대되면 보험회사의 수리부품 관리 범위도 비순정부품을 통한 수리비 절감 중심에서 보험계약·수리 견적 단계의 고지 내용과 부품 품질기준, 협력 수리업체의 부품 적용절차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유타주법은 수리 견적서 고지 의무에 대해 주 보험청과 보험감독관의 관리·집행 의무를 두지 않고 별도의 집행 주체도 명시하지 않아, 준수 여부를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함

3) Enlyte(2026. 6. 1.), "Navigating Complexity in Collision Claims"

4) The New York State Senate, Assembly Bill A75; Senate Bill S4753

5) Auto Body Association of Texas, "2024-2025 Legislative Efforts"